

제 19 장

환경

제 19.1 조

일반규정

1.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자국의 약속을 확인한다.
2. 양 당사국은 상호 지지적인 무역 및 환경 정책을 추구하고,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따라 자국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한다.
3. 각 당사국은 기초 재량을 행사하고, 자국의 환경정책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유지한다.
4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5.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있는 환경 문제의 개발에 있어 양국 각각의 환경당국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.

제 19.2 조

보호 수준

자국의 환경보호 수준과 자국의 환경발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 를 인정하며, 각 당사국은 그러한 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규

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, 그러한 환경법 및 정책 등을 통해 각 당사국의 환경보호 수준을 계속하여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.

제 19.3 조 다자간 환경협정

1. 양 당사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서 국제 환경 거버넌스 및 협정의 가치를 인정하고, 상호 관심있는 무역 관련 환경 문제의 협상에 대해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을 약속한다.
2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한다.
3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조치는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며, 부당한 무역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

제 19.4 조 환경에 유익한 무역

1. 양 당사국은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.
2.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있는 환경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것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에 동의한다. 그러한 목록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될 수 있다.

제 19.5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

1. 당사국은,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, 자국의 환경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양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법 또는 규정을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하거나, 적용면제 또는 달리 이탈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자국 법 및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환경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한다.

제 19.6 조 생물 다양성

1. 양 당사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의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2. 각 당사국이 자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함을 인정하며, 각 당사국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이용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.
3. 양 당사국은 생물 다양성과 식물·동물 및 서식지를 포함한 생물 다양성의 모든 구성요소 및 수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약속한다.
4. 양 당사국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기여하는 자

국의 토착 및 그 밖의 공동체의 전통지식 및 관행을 존중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

5. 양 당사국은, 유전자원 및/또는 전통지식에 관련된 관행 및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,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동의한다.

제 19.7 조 환경과 기업

1. 양 당사국은 기업을 위한 각 당사국의 환경 지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지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
2.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자국 환경 지침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 19.8 조 기후변화

1.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가 공동 관심사인 것을 인정한다. 그러한 의미에서, 그리고 자국의 국제적 약속에 따라,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를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를 증진하는 것에 합의한다.

2.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, 각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관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한다.

가. 에너지 효율의 향상

나. 식량 안보 또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생

및 재생 에너지,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및 최신의 혁신적인 환경 기술의 연구, 홍보, 개발 및 사용, 그리고

다.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적응성 평가 수단

제 19.9 조 환경에 유익한 기술

양 당사국은, 독성 화학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포함하여,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, 보급, 접근, 사용, 적정 관리 및 유지를 증진하는 것에 합의한다.

제 19.10 조 제도적 장치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된 환경협의회를 설치한다.
2. 환경협의회는 부속서 19가에 따라 수행될 협력 활동을 포함하여, 상호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, 이 협정의 발효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, 그리고 그 후에는 필요한 경우에 회합한다.
3.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 접촉 부서 역할을 하는 부서를 자국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.

제 19.11 조 환경 협력

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며, 양 당사국은 부속서 19가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협력 활동을 개시하고 발전시키기로 약속한다.

제 19.12 조 환경 협의

1. 당사국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 부서에 그러한 요청서를 전달한 후 양 당사국은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.
2.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한다.
3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 부서에 서면 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협의회가 회합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환경협의회는 신속하게 회합되며 그 사안의 해결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 19.13 조 환경 영향 검토

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,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 19.14 조

분쟁해결

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아니한다.

부속서 19가

협력

1. 이 장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,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,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협력 분야의 예시적 목록을 수립하였다.

- 가. 양 당사국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, 이 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강화, 방지 또는 완화시킬 방법에 대한 견해의 교환
- 나. 특히 세계무역기구, 국제연합환경계획 및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하여,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을 담당하는 국제협의체에서의 협력
- 다. 환경 표지를 포함한 민간과 공공의 인증 및 라벨링 제도와 녹색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 교환과 협력
- 라. 환경 규정, 규범 및 기준의 무역 효과에 대한 견해의 교환
- 마. 생물 다양성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
- 바. 다자간 환경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에 대한 협력
- 사. 다자간 환경협정과 국제무역규범 간 관계에 대한 견해의 교환
- 아. 환경재해의 예방 및 관리
- 자. 우수 환경 관행
- 차. 환경 교육, 그리고
- 카.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형태의 환경 협력

2. 양 당사국은 협력 활동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순위 분야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, 이 협정의 발효 후 이러한 우선순위 분야 및 활동을 포함한 작업 계획을 준비할 것이다.